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2007년 7월 1일부터 이른바 ‘비정규직 제·개정법’이 시행된다. 이번호에서는 2006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저희같은 중소벤처업체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많이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2년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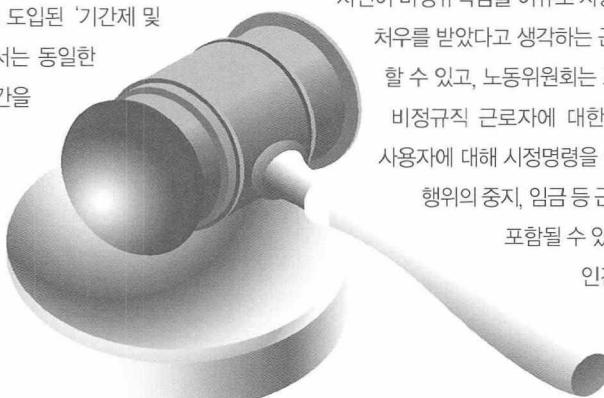


A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법률의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통칭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현행법상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갱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직(기간제) 고용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다시 말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였다면 2회, 6개월 단위로 하였다면 4회까지만 동일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된 경우, 출산·질병·군입대 등으로 인한 휴직, 장기파견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규정은 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수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년 초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임을 이유로(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근로시간, 각종 후생복지 등을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의 형태는 차별적
행위의 종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간비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오히려 입금 차별의 경우 윤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경력, 학력 또는 업무능력에 따른 차별인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같은 인사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차별시정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여 300인 이상·공공부문은 2007. 7. 1부터, 100인 ~ 299인
2008. 7. 1부터, 100인 미만 기업은 2009. 7. 1부터 각각 시행토록 하였다.

* 이선주 노무사 노무법인 <바로> 대표 (02-2633-0505)

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시 전을 이메일 okpr@paran.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